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2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 박용진 • 이소영 • 정성호

이학영・용혜인・기동민

민병덕 · 송옥주 · 전용기

정춘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(은행, 증권회사 등)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음.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.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.

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(안 제3조제4호 신설). 법률 제 호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 업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다음	제3조(적용 범위)
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	
니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	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금
	융투자업자가 같은 법 제3조
	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판매
	하기 위한 거래